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유 료 도 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변 창 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입법예고안

1. 개정이유

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,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1.3.00. ~ 2021.4.00.)

2) 행정규제 :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2호 중 “7인승”을 “6인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① ~ ③ (생략)	제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영 제8조제1항제2호·제2호의2·제3호 및 제4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”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.	④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승차정원(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) <u>7인승</u>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6인승</u> ----- -----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87